

의안번호	282
발의일자	2023. 5. 31.
회부일자	2023. 6. 2.

제340회 제1차 정례회
제 1 차 농 수 산 위 원 회
2023. 6. 19. (월)

『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 진 영

『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남영숙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,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 지역으로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의 촉진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양잠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
4. 관련법령

- 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
○ 예고기간 : 2023. 6. 5. ~ 6. 13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69호)

○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제정 조례안은

○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기능성 양잠산업”이란 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기능성 양잠농가”란 경상북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.
3. “양잠산물등”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·소재 등을 말한다.

* 제3호와 관련하여 개정법에서는 오디와 뽕잎을 새롭게 포함하였음

⇒ 상위법에 따라 “기능성 양잠산업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,
조례의 대상을 경상북도 내 양잠농가로 규정하고 있음

- 안 제3조는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에서는 기능성 양잠농가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음
⇒ 제2항에서 양잠농가의 노력을 권고 형식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임
- 안 제4조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‘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’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
⇒ 상위법에서도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·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5조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규정하고 있음
⇒ 오늘날 양잠산업은 단순히 옷감을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, 미래 대체 먹거리 및 의약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였고,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6조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
⇒ 기능성 양잠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- 안 제7조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
 - ⇒ 양잠산물 생산 및 가공·의약품 생산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전문 인력 양성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 - ⇒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우수 누에 품종 육성,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8조는 양잠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
 - ⇒ 개정법 제9조의4에 따른 규정으로 양잠인의 날에 필요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, 개정된 상위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, 전국 유일 명주 생산지역으로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개정법은 양잠산물에 오디·뽕잎을 명시하고,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에 양잠산물의 판매·유통·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하여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

-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
- 2021년 기준 전국 대비 누에고치 사육량 65.9%, 건조누에 · 생누에 생산량 59.6%, 동충하초 생산량 57%를 차지하고 있어,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
- 조례 제정 시 경북도의 우량누에씨 생산, 공동사육용 애누에 보급 및 동결건조기 운영, 기능성 누에산물 생산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1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

□ 미래 단백질 공급원, 곤충산업 육성

○ (기반조성) 생산시설 고도화 및 지역별 특화곤충 거점화 추진

- 곤충양잠원료 생산·가공·지원시설을 집적화한 거점단지 조성(200억원)
- 곤충 생산·유통·가공·체험 시설 및 장비 4개소 지원(2억원)
- 곤충·양잠 가공지원 센터 운영(곤충산업화 지원사업, 10억원)
- 식용곤충 표준먹이원 공급기반 구축(곤충산업화지원사업, 10억원)

○ (유통활성화) 온·오프라인 소비촉진 지원 및 기업연계 일반식품 출시

-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팜 내 ‘식용곤충제품전용관’ 운영
- 온라인 거점 구축, 홍보·판매장 운영, 기획전 등 지원(35백만원)
- * 도내 농가 곤충제품 할인행사, 무료배송 및 쿠폰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 추진

○ (R&D) 곤충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조성 및 활용 방안

- 기업연계 지역특산물+곤충원료 일반식품(간식류) 정식출시('23.9월중)
- 사과원 화분매개곤충 적용기술 확립 및 우수 여왕벌 품종 육종 등

○ (교육) 양잠·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

- 양잠산업 활성화, 화분매개곤충 활용, 유용곤충활용전문가양성 과정 추진

□ 「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」운영 활성화

○ 곤충사육농가 대상의 현장실습 중심 곤충전문교육 실시

○ 곤충사육농가의 제품개발, 시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화 지원